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11.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10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12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11.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치수과장 조 병 준

가.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법률제7359호, 2005. 1.2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40인으로 구성함. (안제2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함. (안제3조)

○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함. (안제4조, 안제5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회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함. (안제6조)

○ 각 위원은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난방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로부터 재해영향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와 2006. 3. 1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음.

○ 동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전재

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ㅇ 질의요지(김영신 위원) : 위원 자격 기준은?
- ㅇ 답변요지(조병준 치수과장): 8개 분야별 전문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계 학회나 협회에 공문으로 추천받아 선정함.
- ㅇ 질의요지(이매숙 위원) :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관내 거주자로 선정하여 그 지역의 여건과 주변 환경에 관심도 있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ㅇ 질의요지(이진환 위원) : 구의원이 그 지역을 대표하므로 의원이 1~2명 참여하여 지역을 위한 발언권이 있어야 하지 않나?
- ㅇ 답변요지(조병준 치수과장): 현재상태에서는 좀 어렵고, 단지 협회나 학계로부터 공문으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마포구 관내 거주자로 선발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추진하겠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재출년월일 : 2006. 10.
재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법률제7359호, 2005. 1,27)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20~40인으로 구성함. (안제2조)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성 등을 검토함. (안제3조)

다. 위원장과 간사는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함. (안제4조, 안제5조)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 회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함. (안제6조)

마. 각 위원은 공정한 검토를 위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 대상사업 협의 검토에 참여할 수 없음. (안제11조)

3. 주요 토의과제

" 없 음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예산팀 협의 완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06. 09. 21 ~ 2006. 10. 10 (특이사항 없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 : 2006. 10. 20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등) ①서울특별시마포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기능)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회의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